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821 2018. 6. 27.(수) 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봉순 의원 등 5인

나. 발의일자 : 2018년 6월 7일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6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6월 22일

-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박봉순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O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수수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
- O 그 밖에 법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O 수수료 근거 상위법령 일부 개정 사항 반영(안 별표)
 -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복제
 - · 전자파일 1M 초과시 1M당 100원 → 무료
- O 법규 명칭의 약칭 사용 변경(안 제5조)
 - 영 →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 이라 한다.)
-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호식)
 - 금번 개정조례안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전자파일의 수수료를 1M당 100원에서 무료로 변 경하며, 약칭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도록 한 것으로 정보공개 청 구에 대한 자료 제출시 전자파일에 대한 수수료가 무료화 됨으로 써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구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개정으로 판단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: "원안가결"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O 「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 821 호
의 결	2018년 월 일
연월일	(제364회)

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박봉순 의원 등 5인
발의연월일	2018년 6월 7일

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봉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1 발의연월일 : 2018년 6월 7일

발 의 자: 박봉순, 최광옥, 연철흠,

박한범, 윤은희

1. 개정이유

○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수수료 개정사항 반영

O 그 밖에 법규 용어 정비

2. 주요내용

- O 수수료 근거 상위법령 일부 개정 사항 반영(안 별표)
 -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복제
 - · 전자파일 1M 초과시 1M당 100워 → 무료
- O 법규 명칭의 약칭 사용 변경(안 제5조)
 - 영 →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 이라 하다.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총무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관계없음.

라. 입법예고 : 관계없음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"영"을 "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.)"로 한다.

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정 보 공 개 수 수 료(제8조관련)

공개대상 -		공개방법 및 수수료		
	열람•시청	사본(종이출력물) • 인화물 • 복제물		
문서・도면・	○ 열람	○ 사본(종이출력물)		
	- 1일 1시간 이내: 무료	- A3 이상 300원		
	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	· 1장 초과마다 100원		
사진 등		- B4 이하 250원		
		· 1장 초과마다 50원		
	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청취	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복제		
	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	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		
	• 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	• 1개마다 5,000원		
	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	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		
	•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	• 1건마다 3,000원		
		※ 매체비용은 별도		
	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시청	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복제		
	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	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		
	· 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	• 1롤마다 5,000원		
	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	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		
ਗੇ ਦ	·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	• 1편마다 3,000원		
필름· 테이프 등		※ 매체비용은 별도		
	○ 영화필름의 시청			
	-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	○ 사진필름의 복제		
	· 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	- 1컷마다 6,000원		
	-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	※ 매체비용은 별도		
	·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			
		○ 사진필름의 인화		
	○ 사진필름의 열람	- 1컷마다 500원		
	- 1장: 200원	· 1장 초과마다		
	· 1장 초과마다 50원	3″×5″ 200원		
		5″×7″ 300원		
		8″×10″ 400원		
	○ 마이크로필름의 열람	○ 사본(종이출력물)		
마이크로필름	- 1건(10컷 기준)1회: 500원	- A3 이상 300원		
•슬라이드 등	·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	· 1장 초과마다 200원		
		- B4 이하 250원		
	○ 슬라이드의 시청	· 1장 초과마다 150원		

	-1컷마다 200원	
	1 X 1 1 200 0	○ 마이크로필름의 복제
		- 1롤마다 1,000원
		※ 매체비용은 별도
		○ 슬라이드의 복제
		- 1컷마다 3,000원
		※ 매체비용은 별도
	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	○ 사본(종이출력물)
	열람	- A3 이상 300원
	- 1일 1시간 이내 : 무료	· 1장 초과마다 100원
	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	- B4 이하 250원
		· 1장 초과마다 50원
	│ │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	
	의 시청・청취	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
		복제
	- 1편: 1,500원	- 무료
	·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	※ 매체비용은 별도
		○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(문서·도면
		·사진 등)
		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
전자파일		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
		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
		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
		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
		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
		수료와 동일하게 산정
		※ 매체비용은 별도
		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
		복제
		-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
		-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,500원
		※ 매체비용은 별도
		※ 배세비중단 필도

< 비고 >

- 1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
- 2.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 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
- 3.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

개 정 안

제5조(정보의 공표) ① 공개대상기관 제5조(정보의 공표) ① 공개대상기관 적극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.

은 법 제7조제1항 및 <u>영</u> 제4조 제 은 법 제7조제1항 및 <u>「공공기관의</u> 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민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 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하 "영"이라 한다.) 제4조 제1항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민에게 알 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적극 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[별표]

수 수 료 (제7조 관련)

공개대상	복제물 수수료
전자파일	 ○ 전자파일(문서・도면・사진 등)의 복제 무료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(문서・도면・사진 등) 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 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 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※ 매체비용은 별도